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강조한 노동신문 논평에 대한 법적 평가

이 규 창

기획조정실 연구기획성과관리팀장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월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실려 발사된 ‘오미드’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거론하면서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평화적인 우주 이용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란의 이번 위성발사는 자기 나라의 국력을 시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주 개발과 이용에서 독점권이란 더 이상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은 최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동신문 논평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명분쌓기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일성 교시와 북한 국내법, 남북한 간의 합의,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김일성 교시와 1986년 제정되어 2004년 최종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에서 핵무기가 있는 한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수 없으므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배치를 금지하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를 감축하며 나아가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교시한 바 있다. 김일성은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인류는 핵참화의 위험에서 중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세계 평화는 공고한 기초 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환경보호법 제7조는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또 다른 저작집에서 “환경보호법이 채택됨으로써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보장하여 주며 후대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되었다며 환경보호법 채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한 간의 합의 위반에 해당된다. 남과 북은 1992년 2월 19일 효력을 발생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으며(제1조),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할 것을 합의하였다(제2조).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제9조, 제10조).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제의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북한이 그토록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10·4 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제3조 제2항). 한편, 북한은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북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합의에 대한 일방적인 무효선언은 성립할 수 없다. 1969년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은 조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종료시키기 위

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비록 이 협약에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 협약은 국제관습법적인 내용을 성문법전화(codification)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도 이 조약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한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셋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헌장은 회원국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모든 회원국이 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따라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인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유엔헌장상의 회원국 임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 결의에 의해 우리와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바 있다. 한편, 1963년 12월 13일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일명 “우주법원칙 선언”)이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우주활동의 포괄적 법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대로 우주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제3항). 그러나 노동신문의 논평은 이 선언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우주의 탐사 및 이용은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제1항),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제2항). 특히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한다(제4항). 또한 우주의 탐사 및 이용은 협력 및 상호 지원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제6항).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평화적 이용을 가장하고 있지만 북한만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교시와 국내법인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핵무기의 개발과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10·4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한 간의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측의 대화제의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만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이며 우주법원칙 선언에도 부합하는 행동이다.

